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등>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0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3
2. 안마사 고용 가능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주체 확대	6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시·도지사</u> 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안마사) ①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u>제4항</u> 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1. ----- ----- ----- ----- <u>제5항</u> ----- -----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2.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안마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2) 검토의견

□ 현행법상 안마사 자격인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에 해당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이 인정됨.

- 2023년 12월 현재 안마사 자격자는 9,609명이고, 신규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연간 214명인 것으로 파악됨.

< 안마사 자격인정 현황 >

(단위: 명)

구분	'19	'20	'21	'22	'23
전체	8,662	8,905	9,149	9,367	9,609
신규	342	308	272	242	214

자료: 각 시·도 및 안마사협회(보건복지부 취합)

□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안마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안마사에 대하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제25조 준용),¹⁾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가

1)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6조 준용).²⁾

안마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및 보수교육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안마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즉, 최초의 자격인정 업무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나, 이후의 자격관리(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자격정지 등)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대한안마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구조임.

□ 개정안은 최초의 자격인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적인 자격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고,

특히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간호조무

2)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삭제·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사 등 의료법에 규정된 다른 직종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받도록 한 것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은 국가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앙부처 차원의 국가시험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의 필요성이 큰 것과 달리, 안마사는 국가시험 없이 특수학교 등의 교육·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중앙부처 차원의 자격증 발급·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안마사 고용 가능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주체 확대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마사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수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안마사) ①~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국가나</u>	제82조(안마사) ①~③ (생략) ④ ----- <u>국가,</u>

<u>지방자치단체가</u>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u>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u>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 ----- ----- ----- -----. ⑤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82조제4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탁기관이 고용주가 되어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³⁾를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2023년 10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2010년~, 지자체 경상보조)이 수탁기관(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서 안마사를 모집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⁴⁾

해당 단체에 고용된 안마사들이 법 제82조제3항⁵⁾ 및 제66조제1항

3)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4) 참고자료 1 참조

5)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

제2호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를 한 때”에 해당되어 안마사 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임.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수탁기관이 고용주가 되어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안마사를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파견받아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⁶⁾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수탁기관에게도 안마사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안마사 일자리 창출 및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이 안마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격 제한 규정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82조제3항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격과 관련하여 제33조제2항제1호⁷⁾만을 준용하고 있음.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6)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문체부 소관 준시장형공기업)에서 ‘22.~’23.까지 안마사 6명을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파견(위탁계약)받아 직원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나, 의료법 위반 소지로 ‘24년부터 안마원에서 파견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 중임(참고자료 2 참조).

7)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즉,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 등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을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에 비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정하고 있음. 이는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을 엄격하게 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와, 안마사 외에 단체나 법인 등에게도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수행 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마사 고용 제고를 통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점토)

- (안 제82조제1항) 의료인은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발급하고, 국가시험 및 자격증 발급·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반면, 안마사는 국가시험 없이 특수학교 등의 교육·수련

1.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⑩ (생략)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 차원의 자격증 발급·관리 필요성이 낮으며, 오히려 자격증 발급, 안마소 개설 및 감독 등 안마사 전반에 대해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안 제82조제4항)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행 주체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안마사협회가 공공기관에 안마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개별 법령⁸⁾에 근거없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

- 또한,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 복지를 위하여 안마사를 안마사협회로부터 파견받아 직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볼 수 없고 현행법상 안마원에서 파견받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법 개정은 불필요함.

2) 대한안마사협회(찬성)

□ (안 제82조제1항)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이 의료법을 준용하는 안마사에 대한 자격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안마사의 의료인 인정 및 전문화를 통한 자격의 면허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마사 자격의 위상이 격상되고 자격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8)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82조제4항) 공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안마사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 달성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단, 관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안 제82조제1항)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타 직종과 같이 일관된 기준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음으로써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안 제82조제4항)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함.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격 인정제도와 관련해 전문

성과 자립성을 높여 안마사의 권익 보호를 하고자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개요
--------------	-------------------------

- ☐ **(사업코드)** 1539-300(장애인일자리지원) 내역사업
- ☐ **(예산액)** 16,911백만원(지자체 경상보조, 국비 80%)
- ☐ **(내용)**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 **(사업대상)** 만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근로조건)** 주 5일(25시간) / 급여 월 1,260,220원
 - * 4대보험 가입, 1년 근무 시 월 급여만큼 퇴직금 지급
 - **(근무방법)** 안마사 2인을 1개조로 편성, 노인복지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전신 또는 신체부위별 1회 30분씩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규모)** '23년 1,160명
 - ※ '10년 300명으로 사업 시작, '22년 1,110명 등 매년 사업규모 확대
- ☐ **수행체계**
 - **(복지부)** 사업계획 및 제도 수립, 인원 배정 - **(지자체)** 지역 사업계획 수립, 민간수행기관에 재위탁, 예산 교부
 - **(사업수행기관)** 지자체에서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민간기관에 위탁, 위탁기관에서 안마사를 모집, 채용계약 체결
- ☐ **'23년 지역별 추진현황**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60	176	56	84	80	66	120	42	6	122	50	44	50	46	90	44	66	18

【참고2】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안마사 용역 사업 개요
--------------	-----------------------------------

□ 사업의 목적

- GKL(카지노업) 업무특성(24시간 3교대 근무)을 반영하여 현장근로자(카지노딜러 등)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치유
- 영업장 직원들의 건강 증진,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서비스 향상 도모
- 장애인들에게 새 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기관의 일자리창출 모범사례 공유

□ 사업의 범위

- 3개 영업장별 국가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남·여 각 1명씩 근무하여 GKL 직원 대상 전문 마사지 제공 (카지노 딜러 등 현장직 위주 대상)
-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인 원	휴 식
서울 영업본부	10:00~18:00 주 2회 22:00~익일 06:00 주 3회	남·여 각 1명 (총 6명)	1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 (휴게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부산 롯데점	10:00~18:00 주 2회 23:00~익일 07:00 주 3회		

□ 사업기간 : 2022. 3. 1 ~ 2024. 2. 29. (2년)

□ 계약금액 : ₩809,065,776(면세 및 모든 제반비용 포함)

□ 계약대상 : (사)대한안마사협회

※ 사업기간 중에 중앙건강안마원으로 변경

□ 계약방식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 의뢰

※ '24년 사업은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계약 진행중